

한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, 이탈리아와 상호인정 1호 사례 탄생

- 국내기업 제품에 한국·이탈리아 양국의 탄소발자국 라벨 동시 수여
- 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원활화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9월 2일 국내 기업 G.CLO社의 섬유탈취제 제품('CERAVIDA FRESH')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(이하 생기원)과 Carbon Footprint Italy(이하 CFI)가 양측의 탄소발자국* 라벨을 모두 수여했다고 밝혔다. 이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 간에 제품 탄소발자국의 상호인정이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이다.

* 탄소발자국 : 원료채취, 생산, 유통, 폐기 등 공급망 전(全)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값

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. 해외로부터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받은 수출기업은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. 특히 최근 유럽연합(EU)이 '배터리 규정', '에코디자인 규정'과 같이 제품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, 유럽 국가와의 상호인정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.

국내에서 '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'를 운영하고 있는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의 CFI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으며, 이를 통해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추가적인 검증절차 없이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상대 국가의 탄소발자국 라벨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. 이번 탄소발자국 라벨 동시 수여는 해당 협정이 활용된 첫 번째 사례로서 의의를 가진다.

산업부와 생기원은 앞으로도 이탈리아 외에 여타 국가들과도 상호인정 협정을 확대·갱신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.

담당 부서	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	책임자	과 장	이상은 (044-203-4240)
		담당자	사무관	박종민 (044-203-4249)

참고 1

「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」 주요 내용

□ 제도 개요

- (개념) 제3자(검증기관)의 검증을 통해, 제품의 전과정*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(탄소, 물 발자국 등)을 산정한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

* 원료 취득 - 제조 - 유통 - 사용 - 폐기



<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로고 >



<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탄소·물발자국 라벨 >

- (특징) 해외 정부, 고객사 등의 발자국 검증 요구에 대응이 가능한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(KOLAS)* 공인 검증제도

* 국내 발자국 검증기관이 관련 국제표준(ISO 14065)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·관리하는 기관

- (효과) 우리 기업에게 해외 규제당국 또는 고객사 요구 기준*에 따른 국내 검증을 제공해 해외 제도 대비 비용 절감 및 소요시간 단축

* 국제표준(ISO/IEC), 국가표준(英, 佛 등) 포함 해외 현지의 검증 기준 활용

□ 제도 운영체계

* 인정기관과 검증기관의 분리 등 국제상호인정을 위한 국제기준(ISO/IEC 17011) 요구사항 충족

① (운영기관) 프로그램 관리 등 제도 운영 총괄 (한국생산기술연구원)

② (인정기관) 검증기관 인정 등 검증 품질 관리 (한국인정기구)

③ (검증기관) 검증심사를 통한 검증성명서 발급 및 관리 (민간기관*)

* 현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KTR), 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, 한국표준협회(KSA), 한국경영인증원(KMR), 한국품질재단(KFQ),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,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(KPCQA),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(KTC) 등 8개 기관 지정

④ (교육기관) 검증심사원 양성 교육 (대한상공회의소, 엔스타알앤씨)

⑤ (자격인증기관) 검증심사원 역량 평가·자격인증 (민간기관 지정 예정)

참고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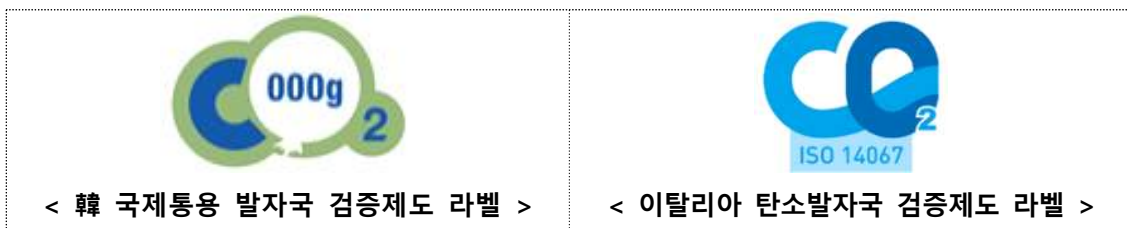
탄소발자국 검증제도간 상호인정 개요

□ 탄소발자국 검증제도간 상호인정협정(MRA)

- (개념) 일방 검증제도에 따라 검증된 탄소발자국이 타방 검증제도에 따라 검증한 결과와 동등하다고 상호 간에 수용하기로 하는 협정
 - (요건*) △양측 검증제도가 동일한 탄소발자국 산정기준(ISO 14067 등)에 기반하고 △검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·절차의 동등성 확인
- * 발자국 검증제도간 상호인정에 관한 ISO/TS 14029 국제표준 준수

□ 탄소발자국 검증 라벨

- (개념) 탄소발자국 검증이 완료된 제품의 외면·포장 등에 부착하여 해당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표식



- (상호인정 시 효과) 일방 제도를 통해 검증받은 탄소발자국 결과값에 맞추어 타방 제도에 따른 검증 라벨을 추가적인 검증 없이 발급 가능

□ 韓생기원 - 伊CFI 상호인정협정(24.11월 체결) 주요 내용

- 양 기관은 ISO 표준에 따라 검증·등록된 타방 기관의 제품 탄소발자국 등을 추가적인 검증·평가 없이 상호 인정하는 데에 동의
- 양 기관은 탄소발자국·탄소중립 관련 인지도 제고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한 자체적인 활동 및 상호간 협력 추진
- 양 기관은 양측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가 관련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상호 간에 조화·일관되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